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보고 제도 개선〉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034호)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037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3  |
| 1. 입법 배경 및 내용 .....                                  | 3  |
| 2. 법안별 검토 .....                                      | 5  |
|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 5  |
| 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 7  |
| ※ [참고자료]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br>추진 현황 ..... | 10 |



##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출연월일 : 2024. 6. 27.
3. 회부연월일 : 2024. 6. 28.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1034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도지사가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인 자에게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등을 신고 받은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 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1037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유통

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취소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 Ⅲ. 검토의견

#### 1. 입법 배경 및 내용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자치 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2023년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81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동 개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2024년 6월 국무회의를 거쳐 80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였음.<sup>1)</sup>

[표 1]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현황

| 개정 취지    | 주요 내용                                           | 대상 법률 수           |
|----------|-------------------------------------------------|-------------------|
| 자치입법권 강화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삭제하거나 조례로 위임 등          | 21개               |
| 지방자율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규정을 통보로 전환 등 국가 관여 최소화 | 68개               |
| 총계       |                                                 | 80개 <sup>2)</sup> |

1) 제21대 제출안(81개 법률안) 중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안 목록은 [참고자료] 참조

2) 2가지 취지의 개정이 모두 이뤄지는 9개의 법률은 중복되어 제외한 수치임

제출된 법률안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해당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은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정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 2] 개정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 및 개정 내용

| 대상 법률         | 개정 사유                                                       | 개정 내용                                                                                           |
|---------------|-------------------------------------------------------------|-------------------------------------------------------------------------------------------------|
| 에너지이용<br>합리화법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련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할 필요              | ○대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br>-시·도지사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부터 신고받은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 ‘통보’                   |
| 유통산업<br>발전법   |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 계획과 대규모점포 관련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할 필요 | ○대상: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및 실적 등<br>-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시행계획 및 실적 등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 ‘통보’ |

## 2. 법안별 검토

###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자<sup>3)</sup>로부터 신고받은 내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표 3]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① (생략)                                         |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 ② -----<br>-----<br>----- <u>통보</u><br>-----.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전년도에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 등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sup>4)</sup>하고 있으며,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5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란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이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가 2천 톤오이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할 지역 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부터 신고받은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대신 ‘통보’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국가 관여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지방시대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 전년도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2. 해당 연도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전년도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 분기별 계획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

## 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관련 사항, 대규모점포등 관련 사항 등<sup>5)</sup>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표 4]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5조(보고)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 제45조(통보 등) ① -----<br>-----<br>-----<br>----- <u>통보</u> -----. |
| 1.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시·도지사가 ①제7조에 따라 수립한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및 ②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 취소 사실을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sup>6)</sup>하고 있음.

### 5) 「유통산업발전법」

제45조(보고)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2. 제8조·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취소 및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3. 제37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실적
4. 제4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실적

그런데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및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관리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행정기관의 관계를 보다 대등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취소 현황 및 분쟁 조정 실적 등의 사항을 종합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대신 ‘통보’하는 것으로 규정 함으로써, 종전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를 보다 대등 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설정하여 지방분권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두 개정안의 취지가 동일하고, 정부 내부에서 하위 법령의 정비가 이미 추진 중이므로 별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 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5조(보고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과 제1항의 본문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공포한 날’로 앞당기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468 |

## 참고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 현황

□ 정부는 아래 80개 법률의 일괄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개정 대상 법률                      |                         |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건축물관리법                        | 문학진흥법                   | 유통산업발전법                        |
| 결핵예방법                         | 문화재보호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공연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자연환경보전법                        |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별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 국토기본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산림보호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석면안전관리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주택법                            |
| 농어촌정비법                        | 수도법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 대기환경보전법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지역문화진흥법                        |
| 도서관법                          |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             | 지역보건법                          |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수산자원관리법                 | 지하수법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축산법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악취방지법                   | 토양환경보전법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어촌·어항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
| 동물보호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말산업 육성법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먹는물 관리법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